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행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없게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원격교습의 경우는 시간당 계산한금액)
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비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습비등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 하는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개시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교습비(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5조 제2항의 “기타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